




<p>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p> 	<p>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</p>	<p>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p> 	<p>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p> 
<p>관세청</p>	<p>관세청</p>	<p>관세청</p>	<p>관세청</p>
<p>관세청</p>	<p>관세청</p>	<p>관세청</p>	<p>관세청</p>
<p>관세청</p>	<p>관세청</p>	<p>관세청</p>	<p>관세청</p>

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세청,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

- 관세청(청장: 김영문)은 ‘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’의 일환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(이하 ‘환치기’라 함) 실태를 조사하고,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, 현재까지 총 6,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하였다.
 - 주요 단속유형은, 불법 환치기 4,723억원(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원),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,647억원,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.
-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여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,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,
 - 관세청은 ‘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/F’를 운영하여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, 마약·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.

□ 주요 적발사례로는

- 첫째,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여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,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(537억원)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, 송금액 중 일부(98억원)를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킴 [👉 사례1]
- 둘째, 호주·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(4,169억원)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은 가상통화로 전송 [👉 사례2]
- 셋째,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,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매각한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(17억원) [👉 사례3]
- 넷째, 국내의 높은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 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(1,647억원)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(5억원)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 [👉 사례4]

□ 금번 단속결과 특이점은

- 그간의 환치기 실태를 보면, 양국 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뒤 부족잔액이 발생할 시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며,
-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송금하고,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

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되었고,

- 또한, 국내에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고, 동 계약을 근거로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

□ 앞으로도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,

- 아울러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,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하여 조사하는 등,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※ 붙임 : 1.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 개요
2. 주요 적발사례

□ 환치기란

- 한국 → 타국가로, 타국가 →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모집하여 한국 및 타국가에 개설된 각각의 계좌로 자금을 수령받고, 국가간 자금송금 없이(또는 최소화) 각 국가에 개설된 계좌에서 의뢰인 지정한 수령자에게 송금해주면서 서로 상계하는 수법으로, 환차익과 수수료 이득을 목적으로 함
- 기존 환치기 수법은 양측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치기계좌의 잔고 발란스에 차이가 발생하면, 잔고가 많은 국가에서 잔고가 부족한 국가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현금을 직접반출하거나, 허위증빙을 이용해 은행송금 하였지만,
- 신종 환치기 수법은 국가 간 환치기계좌의 잔고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 가상통화를 이용하고 있음

< 환치기 흐름도 >



< 사례1 > 가상통화를 이용한 對일본 불법 환치기 운영

○ 환전영업자 A社は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다수인을 모집하여 일본 현지에서 엔화자금을 수령받아 한국내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후, 일본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인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수법으로 '13.11월부터 '17.12월까지 약 537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(불법 환치기)를 운영

※ 일본에서 모금한 자금을 A社가 관리하는 국내계좌로 ① 은행송금(439억원)하거나, ② 일본에서 가상통화를 구매(98억원)하여 국내로 전송.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자금원으로 사용

- 무등록외국환업무(불법 환치기) 537억원

< 거래도 >



< 범죄 수법 >

- ①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의뢰자들이 엔화 입금
- ②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가상통화 구매 후 A社 일본 전자지갑에 전송
- ④ 은행을 통해 국내 A社로 해외송금(439억원)하거나, A社 국내 전자지갑으로 가상통화 전송(98억원 상당)
- 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통화 판매하여 현금화
- ⑥ 송금 의뢰자가 지정한 국내계좌로 이체

< 사례2 > 가상통화를 이용한 對호주 불법 환치기 운영

○ B씨 일당은 호주현지에 송금업체를 설립하고, 한.호주간 무역대금 및 유학 자금 등의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, 한국과 호주에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'13.3월부터 '17.12월까지 약 4,169억원 상당 무등록외국환업무(불법 환치기)를 영위하였음

※ 특히, 이들은 한.호주간 환치기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, 이 중 3억원은 가상통화로 전송

- 무등록외국환업무(불법 환치기) 4,169억원

< 거래도 >



< 범죄 수법 >

- ①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자금 영수
- ② 한국에서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한국 계좌로 이체
- ③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자금 영수
- ④ 호주에서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호주 계좌로 이체
- ⑤ 환치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한국으로 자금 이동

< 사례3 >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불법 환치기 운영

- C社は 해외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원화자금을 영수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, 해외 제휴업체에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해외수령인에게 현지 통화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'16.10월부터 '17.5월까지 약 17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(불법 환치기)를 영위하였음.

※ 국내 의뢰인 중 수출입 기업은 물품 수입대금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 지급 등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중

- 무등록외국환업무(불법 환치기) 17억 6천만원

< 거래도 >



< 범죄 수법 >

- ①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자금 영수
- ②③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 구매 후 C社 전자지갑으로 전송
- ④ C社 국내 전자지갑에서 해외 C社 제휴업체(가상통화 취급업소, 소액송금업 겸업)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 전송
- ⑤ C社 제휴업체가 비트코인 매각자금을 현지화폐로 해외 영수자에 이체

< 사례4 > 페이퍼컴퍼니 이용 비트코인 구매대금 불법 송금.해외예금 등

○ D社は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여 '15.12월부터 '17.12월까지 약 1,647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불법 해외예금한 후 비트코인을 구매하였으며,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구매자금 중 일부(5억원)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재산국외도피 하였음.

- 불법 해외예금 1,647억원
- 재산국외도피 5억원

< 거래도 >



< 범죄 수법 >

- ①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소프트웨어 구매대금 명목으로 해외송금
- ② 송금한 자금중 5억원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로 빼돌려 재산국외도피
- ③④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 구매 후 페이퍼컴퍼니 전자지갑에 전송
- ⑤ 해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 D社 전자지갑으로 가상통화 전송
- ⑥⑦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 판매 후 원화 계좌로 입금받음